

보도자료



보도 2018.10.4.(목) 조간 배포 2018.10.3.(수)

	금융위 가계금융과장 박 주 영(02-2100-2510)		윤 영 주 사무관 (02-2100-2511)
책 임 자	금감원 여신감독국장 김 동 궁(02-3145-7550)	담 당 자	전 광 준 팀장 (02-3145-7435)
	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 이 재 선(02-6710-0803)		박 보 영 과장 (02-6710-0813)

제 목 :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연대보증 관행이 폐지됩니다.

- ★ '19.1.1일부터 신규 취급하는 개인대출계약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대보증 폐지
 - **기존 연대보증 계약**은 계약 변경·갱신시 **연대보증 취급을 중단**하고, **매입 채권추심업자**는 '19.1.1일 이후 체결된 **연대보증계약채권 양수·도 금지**

1 추진 배경

- □ 그간 **은행** 및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연대보증 폐지를 확대***하였으나, 대부업계는 **연대보증 관행**이 남아있는 상황
 - * ① 은행 : ('08.6월) 개인대출 연대보증 폐지 \rightarrow ('12.5월) 개인사업자대출 연대보증 폐지, 법인대출 제한적 허용 \rightarrow ('13.7월) 사실상 경영자에 대한 법인대출 연대보증 금지
 - ② 제2금융권(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보험사): ('13.7월) 연대보증 폐지 도입
 - 대부업계 연대보증 대출잔액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 * 대형 대부업자 감독권 금융위 이관 후('16.7월) 33개 업체가 연대보증 폐지에 자율 동참
 - < <u>대형 대부업계[자산 500억원 이상]* 연대보증대출 취급 현황</u> >

구 분	'15.12말	'16.12말	'17.12말	'18.3말
잔 액(억원)	10,161	10,440	7,889	8,313
<u></u> 건 수(천건)	253	276	126	119

- ※ 69개사,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전체 대부잔액(연대보증대출 포함)의 83% 이상 차지
- □ 연대보증은 대부업자의 책임있는 대출 심사기능을 약화시키고, 채무자주변 사람들까지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만큼,
 -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연대보증 폐지*를 추진
 - * 지난 '17.12.17일 발표한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

2 연대보증 폐지 방안

- □ (신규계약)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19.1.1.부터 신규 취급하는 개인 (개인사업자 포함) 대출계약에 대해 연대보증 폐지(법인대출은 제한적 허용)
 - * 금전대부업자(2개 이상 시·도 영업소 설치 등), 매입채권추심업자, P2P연계대부업자
 - < 연대보증 폐지 및 예외적 허용범위(금융권과 동일기준) >

개인	이치저 메피					
개인사업자	원칙적 폐지					
법인	① 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② 최대주주 ③ 지분 30% 이상 보유자 ④ 배우자 등 합계지분 30%이상 보유자 중 1인만 허용					
	① 담보 대출 등 에 있어 법적인 채권 행사 를 위해 필요 한 경우 *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 예 · 적금 담보 제공시, 금융회사가 완전한 담보권 취득을 위해(선순위 채권 등이 있는 경우에 대비) 그 제3자를 보증인으로 입보					
에피역 이용	② 채무자 와 공동 으로 사업 을 수행 하면서 이익을 공유 하는 경우 * 건물신축자금 대출시 토지소유자 · 건축주 등이 보증인으로 입보하는 경우, 분양 계약자에 대한 중도금 · 입주자금 등 대출시 시행사 ·시공사가 입보					
	③ 법인 은 형식적 채무자 에 불과하고, 그 구성원이 실질적 채무자 인 경우 * 조합 등 단체명의 대출시 그 구성원이 보증인으로 입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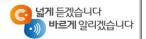
- □ (기존계약)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원칙적으로 '19.1.1.부터 대출기간 연장, 대출금액 증액 등 계약 변경 및 갱신시 연대보증 취급을 중단
 - 기존 대출은 회수하지 않고 **연대보증 조건만**을 해소하되, 대출회수가 불가피한 경우 **3년 동안 단계적으로 해소**
- □ (매입채권추심업자) 금융위 등록 매입채권추심업자는 '19.1.1.이후 모든 대부업자가 신규 체결한 대출계약 중 연대보증이 있는 채권 양수·도 금지

③ 향후 추진계획

- □ **대부업법시행령 개정***(10월말) 및 **대부금융협회 표준규정** 마련('18년 중)
 - * 업무방법 표준화 등 대부금융협회 자율규제업무 수행에 대한 근거 마련
- □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연대보증 폐지 시행('19.1.1.)
 - o 연대보증 폐지 이후 금감원이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할 계획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참고

대형 대부업계[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연대보증 현황

- □ (차주별 현황) 개인 차주에 대한 연대보증대출은 현저히 감소한 반면, '17년 이후 법인 차주에 대한 연대보증 대출은 급격히 증가
 - P2P연계대부업자의 법인부동산 담보대출 및 대부업자間 자금조달용 대출시 대표이사 등의 보증을 요구한 데 주로 기인

< 차주별(개인/법인) 연대보증대출 현황 >

(단위: 억원, 천건, %)

구 분		'15.12말		'16.12말		'17.12말		'18.3말	
			비중		비중		비중		비중
개인	잔액	9,259	98.4	7,981	97.8	2,400	52.9	2,619	50.1
	건수	233	100.0	216	100.0	38	97.4	38	98.7
법인	잔액	151	1.6	182	2.2	2,136	47.1	2,605	49.9
	건수	0.02	0.0	0.04	0.0	1	2.6	0.5	1.3
합계	잔액	9,410	100.0	8,163	100.0	4,536	100.0	5,224	100.0
	건수	233	100.0	216	100.0	39	100.0	39	100.0

□ (잔존만기 현황) 대부분 3년 이하(대출규모가 큰 법인대출은 1년)의 단기 계약이나, 일부 대출계약은 5년을 초과하는 장기계약

< <u>연대보증대출 만기 현황('18.3말)</u> >

(단위: 억원, 건, %)

구분	1년 이하	1년~2년	2년~3년	3년~4년	4년~5년	5년 초과	계
 잔액	4,212	973	1,803	847	471	7	8,313
구성비	50.7	11.7	21.7	10.1	5.7	0.1	100.0
 건수	18,195	23,953	46,145	20,629	10,386	172	119,480
구성비	15.2	20.0	38.6	17.3	8.7	0.1	100.0

□ (금리 현황) 연대보증인에 의한 신용보강에도 불구, 연대보증대출의 대출금리는 보증이 없는 신용대출과 유사한 수준

< 무보증 신용대출 / 연대보증대출 대출금리 현황 >

(단위: 연%)

구 분	'16년	'17년	'18.3	
연대보증대출	28.0	24.2	22.3	
여타 대출(無보증)	24.4	23.3	22.5	

* 대부업자 직접대출(가중평균금리) 기준